

「연말정산 미리보기」 매뉴얼

1 연말정산 미리보기 접근 경로

□ 홈택스 회원과 비회원 모두 이용 가능

회 원	비 회 원
① 공인인증서로 회원 접속	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 비회원 접속
↓	↓
② 「연말정산 미리보기」 아이콘 선택	② 연말정산 간소화 > 연말정산 미리보기

접근방법(회원용)

① 공인인증서로 회원 접속



② 연말정산 아이콘 선택



접근방법(비회원용)

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 접속

비회원 로그인

성명

주민등록번호 -

· 개인은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만으로 간편하게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, 본인인증을 위하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.

※ 비회원 로그인(공인인증서)으로 이용가능한 메뉴
 종합소득세, 양도소득세, 증여세 신고/납부, 근로장려금·자녀장려금 신청/조회, 연말정산 소득공제자료조회, 편리한 연말정산, 민원증명 일부 메뉴, 모의계산(양도세, 증여세), 사업장현황신고서 등

· 홈택스는 국제기분법 시행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합니다.
제66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세무공무원의 범 및 세법에 따른 국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9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인증서 선택창

인증서 저장 위치 선택

사용할 인증서 선택

소유자명	유효	발급기관	만료일
홍길동	유효	은행	2020.04.26

인증서 비밀번호 입력

가상키보드를 사용하면 입력한 내용이 보다 안전하게 보호됩니다.

② 비회원 전용화면 메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> 연말정산 미리보기 선택

비회원 전용

홈택스를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을 위하여 회원가입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일부메뉴만 제공합니다.

홈택스의 모든 메뉴를 사용하고자 하시면 회원가입을 한 후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.

근로장려금·자녀장려금

- 신청하기
- 신청접수내역조회
- 장려금 미리보기
- 사전예약 신청
- 첨부서류제출하기
- 소득정보 제공동의 신청
- 소득자료확인하기
-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여부 조회
- 주택 등 기준시가 조회
- 승용차 가격조회
- 현지접수창구조회

민원증명

- 증명발급안내
- 사실증명신청
- 민원증명 원본확인(수요처 조회)
- 문서위변조방지 및 처벌안내
- 증명발급 민원신청결과조회
- 휴업사실증명
- 폐업사실증명
- 납세증명서
- 납세사실증명서
- 소득금액증명신청
- 연금소득자들의 소득공제 명세
- 모범납세자증명
- 소득확인증명서(재형저축 가입용)
- 소득확인증명서(장기집합투자증권투자가입용)

신고/납부

- 사업장현황신고
- 양도소득세
- 양도소득세 종합안내
- 양도소득세 신고안내정보조회
- 증여세
- 상속 증여재산 평가하기
-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
- 지방소득세 납부
- 납부내역 조회
-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
- 종합소득세
-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
- 세금신고 삭제요청

상담/제보

- 나의 상담 내역
- 상담사례검색
- 탈세제보

세무대리정보

- 나의세무대리수임동의
- 나의신고대리수임동의
- 나의세무대리인조회
- 발급된 증명정보
- 나의세무대리인 해임
- 신고대리 정보이력 조회

신청/제출

- 사업자등록신청(개인)
- 사업자 정정신고(개인)
- 공동사업자승인하기
- 공동사업자재내역보기
- 민원신청결과조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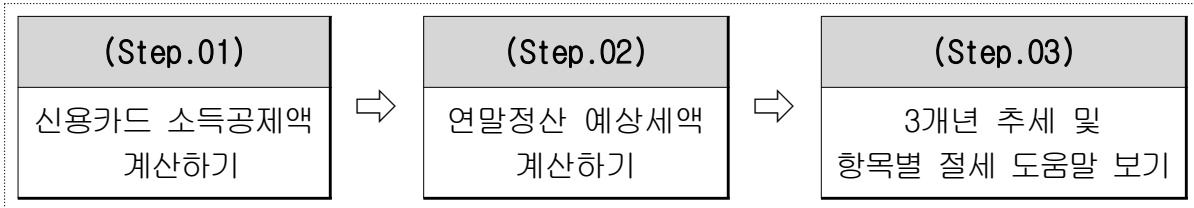
연말정산

- 연말정산 간소화
- 연말정산 미리보기**

2 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 설명

□ 초기화면

-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서비스 내용, 입력할 내용,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화면으로 (Step.01) → (Step.02) → (Step.03)으로 이동하면 예상세액, 절세 도움말(Tip) 등을 확인할 수 있음.



연말정산 미리보기

연말정산 미리보기가 근로자들의 편리한 납세의무 이행을 지원 합니다.

이용절차

- Step.01**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
국세청은 올해 미리 수집한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(지급명세서) 내용을 제공합니다.
근로자가 근무기간과 올해의 총급여액, 10월~12월의 신용카드 예상 사용액을 입력(수정)하면 신용카드 공제액을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.
- Step.02**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
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과 Step.01에서 계산한 신용카드 공제액을 기초로 각 항목별 공제 금액을 미리 채워줍니다.
근로자가 각 항목별 공제금액을 올해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.
- Step.03** 3개년 추세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
국세청은 Step.02를 통해 계산한 결과물 토대로 각 항목별 절세Tip과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고, 최근 3년간의 공제항목과 비교한 그래프를 제공합니다.
근로자가 공제금액과 한도액을 비교하고, 절세Tip과 유의사항을 활용하면 합리적인 절세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.

이용방법 문의

서비스 이용방법 등 궁금한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편리한 연말정산 및 연말정산간소화 이용방법 : ☎ 126 ▶ 1 ▶ 5
- 연말정산 세법상담 : ☎ 126 ▶ 2 ▶ 3

[Step.01로 가기](#)

□ 2개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

- 최근 3년 사이(2015년~2017년)에 연간 2개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「근무처선택」 화면이 팝업창으로 나타나며, 선택한 근무처의 연말정산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

근무처선택
x

• 귀하는 여러 근무처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정산하여 신고하지 않았습니다. 다음단계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주된 근무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.
 복수의 근무처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주(현)근무처에서 이를 합산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. "연말정산 미리보기" 는 하나의 근무처를 선택한 후 그선택된 근무처의 연말정산 자료를 기초로 서비스합니다. 따라서 복수의 근무처 연말정산자료를 합하며 계산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• 아래에서 귀속연도별 근무처를 선택하세요

• 2015년 귀속 (단위 : 원)

선택	사업자(주민) 등록번호	상호	사업장 주소	근무시작일	근무종료일	총급여	결정세액
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	315-81-00002	주식회사...	충청북도 청주시...	2015-06-01	2015-12-31	7,148,120	0
<input type="radio"/>	315-81-00001	(주)국세	대전광역시 유성구...	2015-09-01	2015-12-31	7,468,200	0

• 2016년 귀속 (단위 : 원)

선택	사업자(주민) 등록번호	상호	사업장 주소	근무시작일	근무종료일	총급여	결정세액
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	315-81-00002	주식회사...	충청북도 청주시...	2016-01-01	2016-12-31	13,224,000	0

• 2017년 귀속 (단위 : 원)

선택	사업자(주민) 등록번호	상호	사업장 주소	근무시작일	근무종료일	총급여	결정세액
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	315-81-00002	주식회사...	충청북도 청주시...	2017-01-01	2017-12-31	14,700,230	0

적용하기
닫기

□ (Step.01)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

- 올해 총급여 예상액과 부양가족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는 화면으로, 지난해 연말정산한 총급여 · 부양가족 명세 ·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월 ~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공함.
- 다만, 제공 동의를 받지 않은 부양가족의 1월 ~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「연말정산 간소화」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확인할 수 있음.

처리순서

- ① 2017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→
- ②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 수정 →
- ③ 올해 부양가족 추가 또는 삭제 →
- ④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 →
- ⑤ 10월~12월 신용카드 등 사용 예상금액 입력 →
- ⑥ 계산하기 →
- ⑦ 예상절감액 확인 →
- ⑧ 저장 →
- ⑨ 절세 도움말(Tip) 및 유의사항 조회 →
- ⑩ 과거 3년 현황 →
- ⑪ (Step.02)로 가기

연말정산 미리보기

(Step.01)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| (Step.02)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| (Step.03) 3개년 추세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

2017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|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 수정 | 부양가족 신용카드자료선택 | 10월~12월 예상사용액 입력 | 계산하기 | 항목별 절세 및 유의사항

➔ 2017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**1**

➔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 수정

근무기간: 2018년 1월 ~ 계속 근무 | 총급여액: 30,000,000 원 **2**

➔ 부양가족 신용카드자료 선택

부양가족추가 **3** | 부양가족삭제 | 신용카드자료불러오기 **4**

삭제 선택	성명	주민등록번호	관계	자료 제공 동의 여부	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(1월~9월)					
					합계	신용카드	직불카드	현금영수증	도서공면	
<input type="checkbox"/>	김국세	570306-*****	소득자 본인	Y	18,951,818	4,975,834	6,987,992	0	0	6,987,992

※ (부양가족 범위) 나이와 상관없이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(형제자매는 제외)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부양가족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자료제공동의를 하여 있지 않으면 조회가 안됩니다.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자료제공동의를 받은 후에 '신용카드자료불러오기'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금액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. (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공동의 바로가기)

처리결과

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을 보여주며 2017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공제금액을 활용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으로 인하여 줄어드는 세액(결정세액 감소)을 보여줌.

5 2018년 신용카드 사용현황
9 절세Tip 및 유의사항
10 과거 3년 현황

2018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확인(10월 ~ 12월 예상액 입력)

항목	1월~9월 사용액	10월~12월 예상액		합계
		본인	부양가족	
소계	18,951,818	5,000,000	0	23,951,818
신용카드	4,975,834	5,000,000	0	9,975,834
직불카드	6,987,992	0	0	6,987,992
현금영수증	0	0	0	0
도서				
신용카드	0	0	0	0
직불카드	6,987,992	0	0	6,987,992
현금영수증	0	0	0	0
전통시장 사용액	0	0	0	0
대중교통 이용액	0	0	0	0



구분	신용카드 등	추가공제		
		도서 공연	전통시장	대중교통
①공제한도	3,000,000	1,000,000	1,000,000	1,000,000
②공제금액	3,000,000	1,000,000	0	0
한도미달액 (①-②)	0	0	1,000,000	1,000,000

6 계산하기 8 저장

7 예상 결감세액

·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과 예상 공제세액은 계산 편의상 2017년도 지급명세서의 공제항목이 자동반영된 것으로 (Step.02)에서 각종 공제항목을 출해 상황에 맞추어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달라져 예상 공제세액이 바뀔 수 있으므로 (Step.01)로 다시 돌아오면 변경된 예상 공제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구분	1월~9월 사용분	10월~12월 예상액	합계
신용카드 등 사용금액	18,951,818	5,000,000	23,951,818
신용카드 등 공제금액	3,435,545	564,455	4,000,000
신용카드 등 공제세액	263,815	38,101	301,916

첫 화면 돌아가기
11 Step 02 가기

□ (Step.02)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

- 올해 총급여, 미리 낸 세금 예상액 및 각 항목의 예상 공제금액을 수정 입력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으로, (Step.01)에서 계산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예상액과 지난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금액으로 미리 채워줌.
- 다만, (Step.01)에서 「2017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」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하기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액이 채워지지 않음.

처리순서

- ① 올해 예상되는 총급여액 및 기납부세액으로 수정 → ② 소득공제의 해당 항목 입력·수정 → ③ 세액감면·공제의 해당 항목 입력·수정 → ④ 계산하기 선택 → ⑤ 저장 선택 → ⑥ (Step.03)으로 가기

연말정산 미리보기

(Step.01)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계산하기 | (Step.02)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| (Step.03) 3개년 추세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

- 2017년 지급명세서와 (Step.01)에 입력한 내용을 기초로 항목별 공제금액과 예상세액을 미리 채워드립니다. (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 경우 공제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.)
- [총급여·기납부세액 수정] 및 각 항목별로 [수정] 버튼을 클릭하여 올해 상황에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.
- 각 항목을 수정한 후 [계산하기] 버튼을 클릭해야 재계산되며, [초기화] 버튼은 모든 항목을 0으로 설정합니다.

총급여액, 기납부세액 수정 | 공제항목수정 | 계산하기 | TIP Step.03 3개년 추세 및 항목별 절세 Tip, 유의사항보기

근무기간
※ 근무기간과 신용카드 사용금액 수정은 [Step.01]에서 하시기 바랍니다.

급여 및 예상세액 1 총급여·기납부세액 수정

※ 소득공제, 세액감면 공제의 각 항목은 +수정을 클릭하여 세부 항목을 입력하여야 정확한 세액계산이 가능하며, 공제항목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도움말이 나타납니다. (단위 : 원)

① 총급여	30,000,000	② 근로소득금액	20,250,000
③ 과세 표준	13,121,015	④ 산출세액	888,152
⑤ 결정세액	301,749	⑥ 기납부 소득세액(먼저 낸 세금)	0
⑦ 차감정수납부(환급)예상세액(⑤-⑥)	301,740	⑧ 농어촌특별세	0

※ 기납부세액 : 처음에는 지난해 연말정산시 신고한 금액을 보여줍니다. 따라서 회사를 통해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매월 월급에서 낸 세금과 앞으로 12월분까지 낼 예상세금의 합계를 입력하세요. (중전 근무지 결정세액 포함)

소득공제 2 계산하기

※ +를 클릭하면 그림명 상세항목이 펼쳐지며, 공제항목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도움말이 나타납니다. (단위 : 원)

공제항목명	사용(납입) 금액	소득공제액 (㉠)	공제한도 (㉡)	한도미달액 (㉢-㉠)
<input type="checkbox"/> 인적공제	<input type="checkbox"/> 수정	-	3,000,000	-
- 기본공제		-	3,000,000	-
- 추가공제		-	0	-
연금보험료공제	<input type="checkbox"/> 수정	135,270	135,270	-
<input type="checkbox"/> 특별소득공제		558,170	558,170	-
- 건강보험료 등	<input type="checkbox"/> 수정	558,170	558,170	-

도움정보

도움말 | 한도액비교 그래프 | 급여 증감에 따른 공제 한도(문턱) 변화 보기

왼쪽 공제항목명을 클릭하시면 해당항목의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.

③ 세액감면·세액공제 (단위: 원)

공제항목명	사용(납입) 금액	세액공제액 (㉠)	공제한도 (㉡)	한도미달액 (㉡-㉠)
세액감면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수정	-	0	-
근로소득		-	488,483	-
<input type="checkbox"/> 자녀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수정	-	0	-
- 자녀		-	0	-
- 출생임양		-	0	-
<input type="checkbox"/> 연금계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수정	0	0	-
- 퇴직연금계좌		0	0	-
- 연금저축계좌		0	0	-
<input type="checkbox"/> 특별세액공제		816,008	97,920	-
- 보장성보험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수정	816,008	97,920	270,000
- 의료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수정	0	0	-
- 교육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수정	0	0	-
- 기부금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수정	0	0	-
- 표준세액공제		-	0	-
납세조항공제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수정	0	0	-
주택차입금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수정	0	0	-
외국납부세액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수정	0	0	-
월세액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수정	0	0	900,000
소계		-	586,403	-

Step 01 가기 ④ 계산하기 ⑤ 저장 초기화 ⑥ Step 03 가기

공제금액 입력 . 정정방법

- ㉠ 공제항목을 선택(공제항목 앞이 인 경우에는 상세항목이 숨겨져 있으므로 이를 선택하면 상세항목이 펼쳐짐).
- ㉡ 해당항목의 수정 버튼을 선택하면 공제대상금액을 입력할 수 있는 팝업창이 표시됨(항목 명을 선택하면 상세설명이 오른쪽 Tab에 나타남).
- ㉢ 공제대상금액 입력.
- ㉣ 적용하기 버튼을 선택하면 공제금액 등이 자동계산 되어 본 화면에 보여줌.

(예시) 보장성 보험 입력순서(특별세액공제의 선택 → 보장성 보험료 수정 버튼 선택 → 공제대상금액 입력 → 적용하기 버튼 선택)

세액감면 · 세액공제 (단위: 원)

공제항목명	사용(납입) 금액	세액공제액 (㉠)	공제한도 (㉡)	한도미달액 (㉡-㉠)
세액감면	㉠ 수정	-	0	-
근로소득	-	488,483	-	-
☐ 지내	㉠ 수정	-	0	-
- 지내	-	0	-	-
- 출생일양	-	0	-	-
☐ 연금계좌	㉠ 수정	0	0	-
- 퇴직연금계좌	-	0	0	-
- 연금저축계좌	-	0	0	-
☐ 특별세액공제	816,008	97,920	-	-
- 보장성보험료	㉠ 수정 816,008	97,920	-	-
- 의료비	㉠ 수정	0	0	-
- 교육비	㉠ 수정	0	0	-
- 기부금	㉠ 수정	0	0	-
- 표준세액공제	-	0	0	-
납세조합공제	㉠ 수정	0	0	-
주택차입금	㉠ 수정	0	0	-
외국납부세액	㉠ 수정	0	0	-
할세액	㉠ 수정	0	900,000	900,000
소계	-	586,403	-	-

보험료 세액공제 상세자료 입력

항목	대상금액	공제금액
보장성 보험료(납입액)	816,008	97,920
장애인 보장성 보험료(납입액)	0	0

초기화 **적용하기** 닫기

Step 01 가기 계산하기 저장 초기화 Step 03 가기

처리결과

- ㉠ 소득 · 세액공제액에 대한 공제한도를 확인할 수 있음.
- ㉡ 소득 · 세액공제액에 대한 한도미달액을 확인할 수 있음.
- ㉢ 「한도액 비교 그래프」를 선택하면 한도가 있는 공제금액에 대하여 공제금액과 한도금액을 그래프로 보여줌.
- ㉣ 「급여증감에 따른 공제한도(문턱) 변화보기」를 선택하면 총급여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문턱, 공제한도의 증감을 보여줌.

소득공제 계산하기 (단위: 원)

※ +를 클릭하면 그룹별 상세항목이 펼쳐지며, 공제항목명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도움말이 나타납니다.

공제항목명	사용(납입) 금액	소득공제액 (㉠)	공제한도 (㉡)	한도미달액 (㉡-㉠)
☐ 인적공제	㉠ 수정	-	3,000,000	-
연금보험료공제	㉠ 수정	135,270	135,270	-
☐ 특별소득공제	-	558,170	558,170	-
☐ 그 밖의 소득공제	18,951,818	3,435,545	-	-
개인연금저축	㉠ 수정	0	0	720,000
-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	㉠ 수정	0	0	5,000,000
- 주택마련저축	㉠ 수정	0	0	-
- 투자조합출자 등	㉠ 수정	0	0	10,125,000
- 신용카드	㉠ 수정	18,951,818	3,435,545	4,000,000
- 우리사주조합출연금	㉠ 수정	0	0	15,000,000
-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	㉠ 수정	0	0	10,000,000
- 장기합참투자증권저축	㉠ 수정	0	0	2,400,000
소계	-	7,128,985	-	-

도움정보

도움말 **한도액비교 그래프** **급여 증감에 따른 공제한도(문턱) 변화 보기**

- 연금보험료공제

항목	요약설명 및 공제요건
국민연금	
공무원연금	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(연금보험료)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
군인연금	* 다만,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공제금액에서 제외
사립학교 교직원연금	
별정우체국연금	

□ (Step.03) 3개년 추세 및 항목별 절세 도움말(Tip) 보기

- (Step.02)의 예상세액 계산 결과를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내용과 비교할 수 있는 도표와 그래프와 그래프를 근로자의 실제 부담 세율(실효세율)정보와 함께 제공.
- 최근 3년간 연말정산 내용을 보여주고, (Step.02)에서 입력한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 맞는 절세 도움말(Tip) 및 유의사항을 안내.

조회결과

- ① 「연말정산요약」 화면은 (Step.02) 계산결과에 대한 연말정산요약, 연도별 현황, 공제항목별 현황을 표와 그래프로 보여줌.

HomeTax 국세청홈택스

조회/발급
민원증명
신청/제출
신고/납부
상담/제보

≡
조회/발급
> 편리한 연말정산
> 연말정산 미리보기
민원신청 처리결과조회

설문조사가기

(Step.01) 신용카드 공제액 계산하기

(Step.02)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

(Step.03) 3개년 추세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

• (Step.03)에서는 (Step.02)의 계산 결과를 최근 3년간 연말정산 내용과 비교한 그래프와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 • 주요 공제항목별로 “절세 Tip”에서는 본인이 얼마를 더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고, “유의할 사항”에서는 일반적으로 실수하기 쉬운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.
 • 이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예상금액에 의한 결과이므로 향후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연말정산 요약
민적공제
신용카드등
교육비
의료비
주택자금
연금저축
보장성보험료
기부금

● 연말정산 요약

- 김국세님은 2017년에 비해 총급여가 15,299,770원 증가하고, 소득공제는 5,805,453원 증가, 과세표준은 9,494,317원 증가, 세액공제 368,802원 증가하여 결정세액은 301,749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● 연도별 현황 (단위 : 원)

귀속연도	사업자번호	근로처	총급여	결정세액	기납부세액	차감정수세액
2015	315-81-00002	주식회사 국세	7,148,120	0	0	0
2016	315-81-00002	주식회사 국세	13,224,000	0	0	0
2017	315-81-00002	주식회사 국세	14,700,230	0	0	0
2018(예상)	315-81-00002	주식회사 국세	30,000,000	301,749	1,270,000	-968,250

※ 예상세액 계산하기 결과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에는 매월 내는 세금이 적정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.
 매월 내는 세금 비율을 근로자가 선택(80% or 100% or 120%)할 수 있으나, 회사 급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본인 상황에 맞는 납부비율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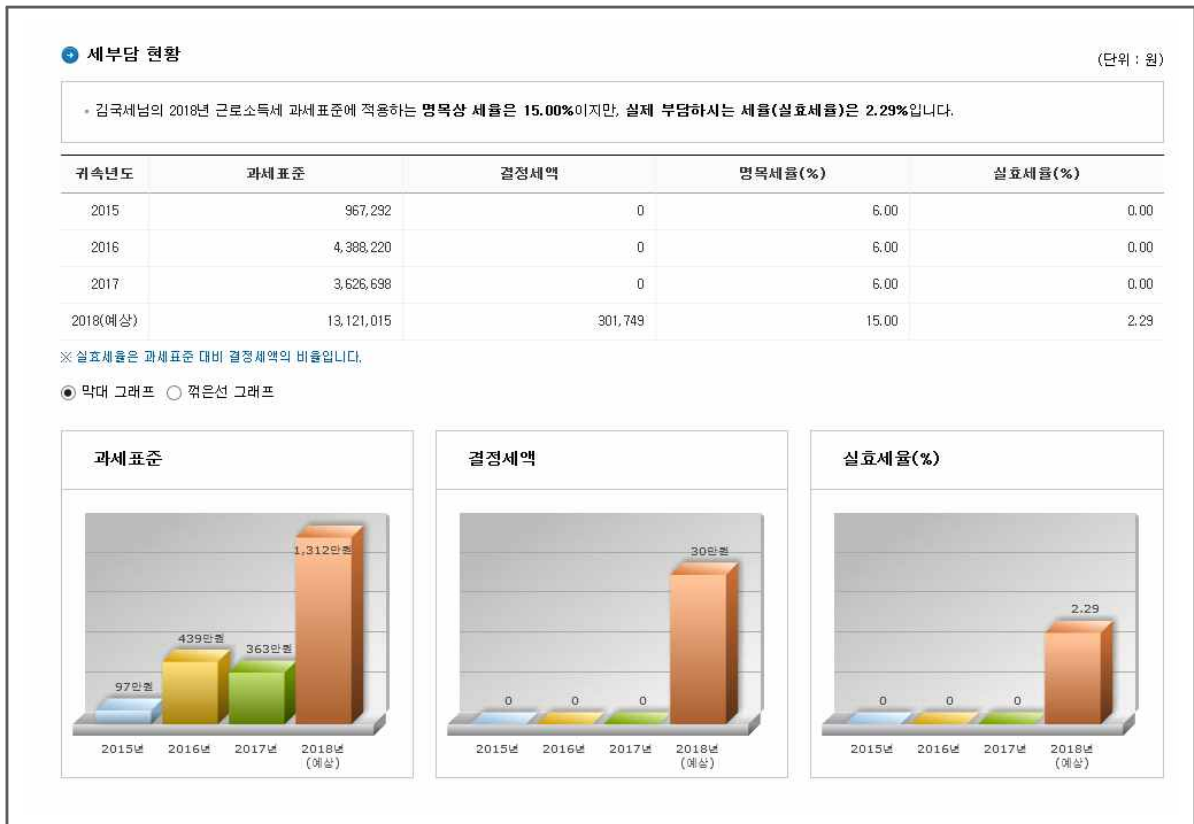
● 막대 그래프 ○ 꺾은선 그래프

총급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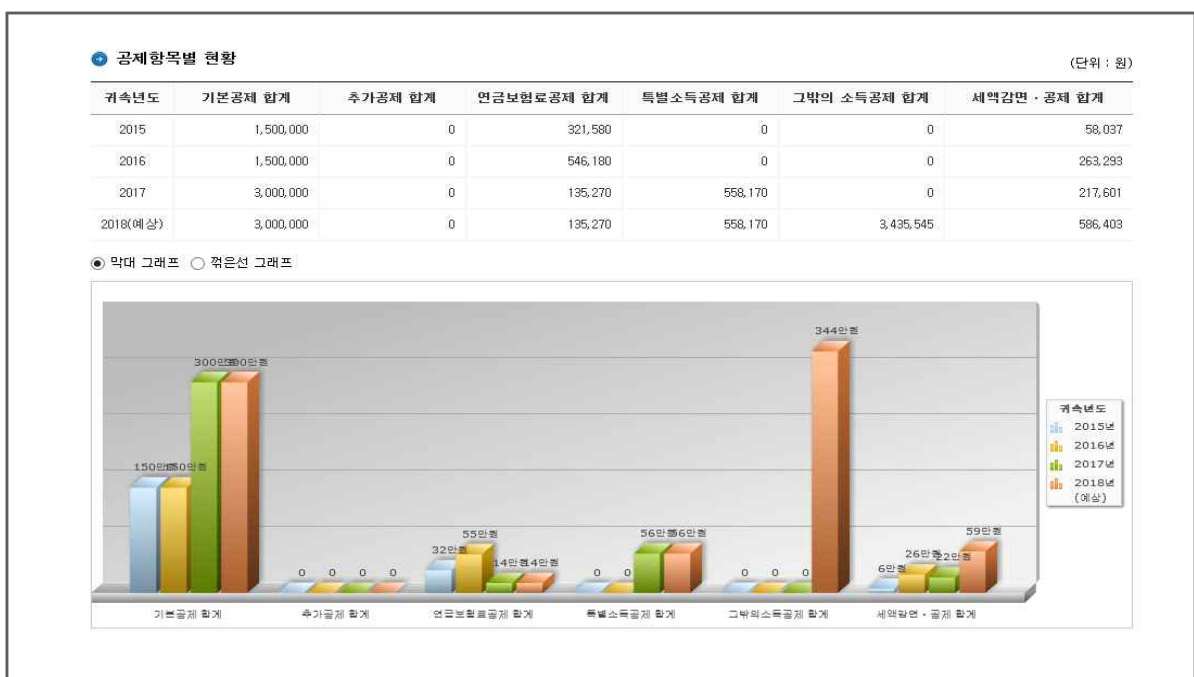
결정세액

차감정수세액

- ② 금년부터는 명목세율뿐만 아니라,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이 반영된 실제 부담 세율인 실효세율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함.



- ③ 「인적공제」, 「신용카드 등」, 「교육비」, 「의료비」, 「주택자금」, 「연금저축」, 「보장성보험료」, 「기부금」 버튼을 선택하면 연도별 공제 금액과 그래프를 보여줌.



④ Step.02 입력결과를 분석하여 절세 도움말(Tip)과 유의사항을 안내함.

연말정산요약 인적공제 신용카드등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기부금

연도별 인적공제 변동현황 (단위 : 원)

귀속 연도	기본공제(본인, 배우자, 부양가족)	경로우대공제	장애인공제	부녀자공제	한부모가족공제	세액공제액		
						6세이하	출산·입양	자녀
2015	1,500,000	0	0	0	0	0	0	0
2016	1,500,000	0	0	0	0	0	0	0
2017	3,000,000	0	0	0	0	0	0	0
2018(예상)	3,000,000	0	0	0	0	0	0	0

막대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

기본공제(본인, 배우자, 부양가족) 경로우대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6세이하 출산·입양 한부모가족 자녀세액

절세 TIP

- 근로자 및 기본공제대상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더라도 실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(다른 거주자와 동시에 중복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) 다만, 직계존속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)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-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(장인, 장모 등) 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혼인(사실혼 제외) 중임이 증명되는 사람을 포함하되
 - 직계존속이 재혼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계부, 계모는 직계존속이 사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
- 근로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그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(사실혼 제외)중에 출산한 자를 근로자의 직계비속에 포함함